

제 321 회 임시 회
제 1 차 교육 위원 회
2013.06.13.(목)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교 육 위 원 회)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전 응 천 의 원 외 6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3년 6월 3일
- 회부일자 : 2013년 6월 4일

3. 제안이유

2001. 7. 27.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동 조례를 시대와 여건의 변화에 적합하게 관련 조문을 보완 및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함
- 정의 조항을 보완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함(안 제2조)
 - 자치법규, 입법, 입법예고 관련한 정의 규정 보완 및 신설 함
- 자치법규 관련 입법예고 대상 및 예외사항 구체화 함(안 제3조)
- 입법예고문은 충청북도 도보 및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의무화 함(안 제5조)
-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가 필요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명시 함(안 제9조)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근거하여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시대와 여건의 변화에 적합하게 조문을 보완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2조에 교육자치법규와 관련된 용어 정의를 보완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 입법예고문 작성 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한 것, 그리고 안 제5조에 입법예고 사항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도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 것과 공청회가 필요할 경우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명시 한 안 제9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은,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나 규칙의 제·개정 과정에서 그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예고하여 도민의 알 권리와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도민의 의견에 대한 수렴의지를 반영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은 적절한 규정이라 판단되며,
- 궁극적으로는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교육자치법규에 관한 입법예고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진다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자치법규의 투명성과 신뢰성, 공공성이 높아지고 교육정책 수행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 됨.

관 련 법 령 발 취

□ 행정절차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12.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1호, 2013.3.23, 타법개정]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5]

<참고자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도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도민의 자치입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자치법규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교육규칙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법규"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충청북도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p>제3조(입법예고)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제도 2. 공중위생 3. 환경보전 4. 행정심판 5. 지방시험 6. 정보화관련제도 7. 기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p>제3조(입법예고)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 및 자구수정 등 경미한 경우 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p>② 교육감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p>
<p>제4조(입법예고의 예외) 입법예고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예고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p><삭제></p>

<p>제5조(입법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문은 별지서식에 의거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방법,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4조(입법예고문의 작성) ① 입법예고문은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주요 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p>
<p>제6조(입법예고 방법) ①교육감은 입법예고문을 충청북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p> <p>②교육감은 제1항의 도보외에도 신문, 방송,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충청북도교육청 회보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문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교육감은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p>	<p>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교육감은 입법예고 사항을 충청북도 도보 및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p> <p>③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이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p>
<p>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협의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제출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입법예고와 병행할 수 있다.</p>	<p><삭제></p>

<p>제8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p>	<p>제6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p>
<p>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②교육감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입법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0조(열람 및 복사) ①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p>	<p>제8조(열람 및 복사) ①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다.</p>
<p>제11조(공청회) ①교육감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 방법으로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시에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p>	<p>제9조(공청회) ①교육감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다른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 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사무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 당해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⑤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p>제12조(예고사항의 확대 실시) 제3조의 입법예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입법안에 있어서도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 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삭제></p>
<p>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 다.</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 한다.</p>
<p>부칙<제2667호, 200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